무역금융: 환어음과 신용장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환어음

19세기 무역금융의 기본 수단은 환어음이었습니다. 영국법은 매켄지 차머스(Mackenzie Chalmers)가 기초하여 1882년 8월 18일 국왕 재가를 받은 1882년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882)으로 이를 법전화하였습니다. 이 법 Section 3은 환어음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서면에 의한 무조건의 지시"로서 발행인이 서명하고, 지급인에게 일람출급으로 또는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장래의 시기에 특정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 이 법은 상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켜 온 관행을 법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제A편 제III장에서 살펴본 1878년 민사법령(Civil Law Ordinance)이 해협식민지에 영국 상사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어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2]

싱가포르 수출업자가 런던의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어음은 다음과 같이 작동하였습니다.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하고 매수인 앞으로 일람 후 일정 기간, 예컨대 3개월, 4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지급되는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어음을 싱가포르의 환은행에 매각하고 즉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어음을 런던 사무소로 보냈고, 런던 사무소는 매수인에게 인수를 위해 어음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시하였습니다. 인수된 어음은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런던 단기금융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은행 실무 지침서들은 인도에서 발행된 어음의 기간이 일람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지고 있다고 기록하였고, 해협식민지의 통화 보고서는 일람 후 4개월 은행어음의 시세를 고시하였습니다.[3]

화환어음

환은행들은 담보 없이 어음을 매입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상품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수령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권리증권의 역할을 하였고, 여기에 상업송장과 해상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첨부된 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행은 매수인이 어음을 인수할 때까지(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또는 어음을 지급할 때까지(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 서류를 보관하였습니다.

화환어음은 멀리 떨어진 당사자 사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수출업자는 매수인을 기다리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으면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선하증권을 통해 상품을 담보로 보유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인수하거나 지급한 뒤에야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보험증권은 해상에서의 화물 멸실을 보상하였습니다. 각 서류는 법적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대주가 만나 본 적도 없는 상인에게까지 자본이 대양을 건너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은행만큼이나 에이전시 하우스에 의존하였습니다. 상사들은 선적을 주선하고 선하증권을 확보하며 보험을 인수시키고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중 다수는 자신이 첨부하는 서류를 발행한 해운회사와 보험회사의 대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사가 상품, 운송, 보험, 어음을 모두 뒷받침하고, 환은행은 자금과 런던과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은, 파운드 스털링과 환위험

싱가포르의 통화는 은화 달러였던 반면, 런던의 통화는 금본위제에 기초한 파운드 스털링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도시 사이의 모든 어음에는 환위험이 따랐습니다. 1870년대 이후 금 대비 은 가격이 하락하자 파운드 스털링으로 상품을 판매한 수출업자는 이익을 보았고, 파운드 스털링 채무를 진 수입업자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들은 양방향의 어음 매입과 매도를 일치시키고 지점 간 포지션을 관리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였습니다.[4] 1860년대와 1880년대의 파산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시장을 잘못 판단한 환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편 제I장에서 서술한 대로 1906년 해협달러가 2실링 4펜스로 파운드 스털링에 고정되면서 싱가포르와 영국 간 무역의 환위험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5] 그러나 통화가 여전히 은본위에 머물러 있던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은행들은 계속해서 세 통화의 삼각관계를 관리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오늘날 그 후신들의 트레저리 부서가 아시아, 유럽, 미국 사이에서 거래하는 고객을 위해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품 담보 대출과 송금

1840년 캘커타 유니언 은행의 거래 조건이 보여 주듯이, 은행들은 어음 업무와 더불어 창고에 보관된 상품과 금은괴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 덕분에 상인들은 시장 상황이 유리해질 때까지 산물 재고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전시 하우스는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자신의 신용으로 다시 빌려줌으로써 아시아 고객들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송금 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중국계 이주민들이 광동성과 복건성의 고향으로 보내는 임금과 이윤은 싱가포르에 모였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송금 자금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중국계 송금업자들은 돈을 모아 영국계 및 기타 은행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송금하였고, 외국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계 은행들은 이 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대형 송금업자들에게 단기 신용을 제공하였습니다.[6] 이렇게 송금은 환은행이 항구의 아시아 경제와 직접 접촉한 최초의 지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환어음에서 신용장으로

화환어음에서는 은행이 수출업자의 매수인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확산된 신용장에서는 은행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수출업자에게 지급할 독자적인 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수출업자는 은행의 약속을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멀리 있는 매수인의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매수인 측 은행은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이 선적되고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서류가 보여 줄 때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 수단에 관한 국제 규칙은 나중에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3년 처음으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을 공표하였습니다. 현행 버전인 UCP 600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7] 제네바 편은 서류 조건의 엄격일치 원칙을 포함하여 오늘날 원자재 무역에서 신용장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서술합니다.[8] 이 책의 제H편은 세계 주요 원자재 무역금융 중심지 중 하나가 된 싱가포르에서의 신용장 활용을 살펴봅니다.

독립 싱가포르의 어음법

영국의 어음법은 식민 통치가 끝난 뒤에도 존속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1949년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949)은 1882년 영국법에 기초하며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을 규율합니다.[9] 식민지 무역의 종이 서류에는 그 후 전자적 등가물이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2021년 전자거래(개정)법(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2021)은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에 따라 환어음, 약속어음, 선하증권은 종이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양도성기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10] 이로써 19세기 환은행들이 매입하던 수단은 디지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1. Wikipedia, “Bills of Exchange Act 1882”(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82년 8월 18일 국왕 재가 및 시행; Sir Mackenzie Chalmers 기초; s. 3은 환어음을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로 정의. ↩

2. Civil Law Ordinance 1878(해협식민지), 이후 Civil Law Act (Cap. 43) s. 5; 제A편 제III장 참조. ↩

3. 동양 어음의 기간(인도 어음의 일람 후 6개월에서 3개월로의 전환, 1890년대 일람 후 4개월 은행어음의 해협 시세)에 관하여는 은행 실무 지침서 “Anglo-Indian Banking”(chestofbooks.com) 및 해협식민지 통화 보고서 참조. ↩

4. Toshio Suzuki, “British Overseas Banks’ Activities in the London Financial Market Before the First World Wa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anking in Asia*, Springer, 2020 수록, 초록: 은행들은 어음, 인도 참사회 어음(Indian Council Bills), 금은괴, 채권, 환거래 예금, 콜머니에 투자하면서 “while avoiding exchange and credit risk”. ↩

5. Wikipedia, “Straits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06년 “the Straits dollar was pegged to two shillings four pence”. ↩

6.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3–14면: 싱가포르는 “became a central accumulation point for remittance funds throughout Southeast Asia”; 민간 송금업자들은 “developed relationships with British and other banks to use their remittance networks”; 외국계 은행들은 “began to provide short-term credit or other financial benefits to major remittance agents”.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Wikipedia,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규칙은 “first promulgated in 1933”; UCP 600은 200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ICC 은행위원회 승인; “formally commenced on 1 July 2007”; 39개 조문; 개정 eUCP는 2023년 시행. ↩
8.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partie H, chapitre I, section « Le crédit documentaire »: 신용장, 확인의 역할 및 RUU 600에 관하여. ↩
9. Bills of Exchange Act 1949 (2020 Rev. Ed.), Singapore Statutes Online. ↩
10. Allen & Gledhill,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mended on 19 March 2021 to includ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개정법은 “gazetted on 12 March 2021”, “19 March 2021”부터 시행;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을 “with modifications” 채택; “transferable documents or instruments, such as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bills of lading”을 대상으로 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